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재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최재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김규남, 김성준,
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
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영한,
박철성, 서준오, 송경택,
유정인, 이민옥, 이영실,
이종태, 임만균, 임종국,
최민규, 한 · 신, 홍국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집행기관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·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정보의 공개가 미흡하므로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 및 교육감이 국가기관에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·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한 경우 사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(안 제 54조의2제1항).
- 나. 시장 및 교육감이 법령 제·개정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(안 제54조의2제2항).
- 다.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이 법령 제·개정을 건의하는 경우 의회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4조의2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(「행정기본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의회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이 제1항과 같은 건의사항을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4조의2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(「행정기본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의회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이 제1항과 같은 건의사항을 국가기관에 제출</u></p>

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
원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
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
사후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
있다.